의 결 안

2015년도 기계분야 제 1-1 회 위 원 회			
년 월 일	2015년 7월 27일(1차) 2016년 2월 일 (2차)	의안번호	제 1-1 호
의 제	인증신제품 적용심사 <주방용자동소화장치(약제누설감지 및 오작동방지)>		

1. 제안부서 : 기전설계팀 ➪ 기전설계부

2. 제안근거 :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 운영기준(2014. 1)

3. 제안사유 : 해당 보유업체로부터 신제품 적용 요청이 있어 부의 ➪ 재심사

4. 심사.의결사항 : **적용 보류(1차) ➪ 적용(2차)**

-(1차) 본 인증신제품은 기능 및 성능에 있어 현재 우리공사 설계기준(시방서 포함)에 적합한 제품으로 적용이 가능함.
다만, 제품단가가 타 제품단가에 비해 현저히 높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구매면제 요청을 하거나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단가를 찾을 때까지 본 위원회의 의결을 보류.

-(2차) 제품단가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구매면제 요청과 관련하여 불수용 의결안을 수용하여 인증 유효 기간 내에 지급자재로 발주되는 자동식소화기에 한해 구매액의 20%를 의무구매 한다.(적용단지 : 별첨#1 "자동식소화기 직접구매계획")

2015년도 기계분야 제1-1회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심사.의결하였음.

2016년 2월 일

위 원 장	건축설계처장	이 우 필	㉤
부위원장	기전설계부장	박 기 호	㉤
위 원	첨단기술사업처장	이 원 풍	㉤
위 원	기계공사부장	김 혁 재	㉤
위 원	기전사업부장	정 기 철(代 정택용)	㉤
위 원	건설사업부장	정 성 호(代 강대호)	㉤